

제 목 : 한국은행 목포본부,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 1년 연장

□ 한국은행 목포본부(본부장 김태정)는 전남서남부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 특별지원의 기한(은행 대출취급 기준)을 종전* '2024년 7월말'에서 '2025년 7월말'로 1년 연장하기로 하였음

* 지난 1.16일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

○ **취약·영세 중소기업**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, 폐업 확대 등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동 지원 조치를 **유지**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한을 1년 연장

○ **연장 시행시**(2024.8월부터) 취약한 부문에 대한 **선별적 지원이 강화**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

- 지원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'중·저신용'에서 '저신용'으로 한정

- 지원 제외업종을 추가(수의업, 약국 등)

- 한도, 대출금리 등 여타 운용방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

□ 금번 기한 연장 및 지원대상 조정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의 **금융비용 부담 완화** 및 **금융접근성 제고**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<붙임> 「한국은행 목포본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연장 주요 내용」

문의처 : 한국은행 목포본부 업무팀 과장 김정애, 조사역 김현옥

Tel : (061)241-1132, 1134 Fax : (061)243-8066 E-mail : mokpo@bok.or.kr

한국은행 목포본부의 보도자료 및 관련 통계자료는

홈페이지(<http://www.bok.or.kr/mokpo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



한국은행 목포본부

(붙임)

한국은행 목포본부 「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」 연장 주요 내용

1 지원 한도 : 1,103억원* <기존과 동일>

* 기존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(C2자금)과는 별개로 지원

2 지원 대상

□ 은행이 아래의 운용기준에 맞게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*

*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또는 대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출 포함

○ (지역) 한국은행 목포본부 관할지역*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한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대출취급실적에 대해서만 지원

* 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, 영암군, 해남군, 강진군, 완도군, 진도군, 장흥군

○ (지원업종*)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, 금융·보험업, 부동산업, 도박업, 수의업, 약국 등 일부 업종은 배제**

* 복수업종 영위 업체의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'주된 업종'을 기준으로 판단

** <참고> '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대상 제외업종' 참조

— 금번 연장시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'수의업'과 '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'을 추가(2024.2~7월중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지원)

○ (신용등급*)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신용(1~3등급) 및 중신용(4~5등급) 중소기업은 제외

*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「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」에 따른 신용등급

— 2024.2~7월중 기 취급된 중신용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지원 (2024.8월부터는 중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은 불가)

○ (업체당 한도) 업체당 은행 대출취급실적 10억원 이내로 제한*

* 단일업체가 복수의 대출을 받는 경우 전체 대출금의 합계가 10억원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대상에 포함

- (중복지원) 여타 금융증개지원대출(이하 '금중대')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*

* 기존 금중대 관련 대출 상환(대환대출 포함)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

- (지원대상 제외 대출금) 아래 각각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
 - 최종부도거래처·폐업업체·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
 - 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방식 대출금
 -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책금융으로부터 대출 재원을 지원받고 있는 대출금(단, 이차보전 방식의 대출은 지원대상에 포함)

3 배정 방식

- 운용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취급실적(말잔 기준)의 75% 해당액을 지원*

* 은행 대출취급실적에 대한 지원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례 배분

- 24.2~7월중 기 취급된 중신용(4~5등급)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%의 지원비율 설정

- 금번 배정분은 여타 부문*으로 전용하여 사용 불가

* 「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」중 전략지원부문, 특별지원부문, 일반지원부문 등

4 지원 기간

- 은행 대출취급기간 : 2024. 8. 1일~2025. 7.31일(1년간)

- 당행 지원기간(배정 기준) : 2024. 10. 1일~2026. 8. 31일

- 은행 대출취급기간 내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(1년 이내)까지 지원

6 대출금리

- 당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(금중대 금리)는 연 2.00%를 적용

7 시행시기

- 2024. 8. 1일(은행 대출취급 기준)부터 시행

<참고>

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대상 제외업종
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
전문 소매업	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
운송관련 서비스업	52915 주차장 운영업
주점업	5621 주점업
금융 및 보험업	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부동산업	68 부동산업
전문 서비스업	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
교육 서비스업	855 일반 교습학원
보건업	86 보건업
오락관련 서비스업	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